

<p>1. 출처 작업그룹(WG)</p> <p>작업 그룹 : 감독작업그룹 문의처 : contact@questforum.org</p>	<p>2. 지침 번호</p> <p>08-005A</p>
<p>3. 관련 문서</p> <p>TL 9000 인증기관 실행지침, Alert 03-005A TL 9000 성과지표 심사, Alert 05-007B TL 9000 부적합 프로세스</p>	<p>4. 발행 일자</p> <p>2008.7.1</p>
<p>5. 발행 이유</p> <p>개정된 TL 9000 인증기관 실행지침의 발행 공지</p>	
<p>6. 지침 내용</p> <p>TL 9000 심사 준비와 실행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TL 9000 사용자와 심사원, 인정기관 대표로 구성된 팀에서는 TL 9000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해왔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인증기관이 심사 계획을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조직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파악하도록 하고 또한 QMS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사 동안에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나열한다. 이 작업을 완수하는 동안 동 작업이 TL 9000 인증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문서에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새로운 자료에는 기존의 TL 9000 인증기관 실행지침과 Alert 03-005A 및 Alert 03-005A의 관련 백서인 TL 18-03, Alert 05-007B이 결합되어 있다. TL 18-03은 TL 9000 성과지표 심사에 대한 심사원의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Alert 05-007B은 TL 9000 부적합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ISO/IEC 1702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되었다. 종합적인 TL 9000 인증기관의 실행지침을 개정한 이 문서는 즉시 사용될 수 있으며 2009.1.1부터는 모든 TL 9000 제3자 인증심사 시에 실행되어야 한다.</p>	

7. 코멘트

최신 문서는 http://www.tl9000.org/handbooks/rh_guidance.html에서 「TL 9000 인증기관 실행지침 R 5.0」에 게재되어 있다.

문서 구조 및 출처

- 1장 : Alert 05-007B
- 2장 : 기존 실행지침
- 3장 : Alert 05-007B
- 4장 : 신규 일관된 접근방법 자료
- 5장 : 신규 일관된 접근방법 자료
- 6장 : Alert 03-005A

TL 9000 인증기관 실행지침 R 5.0

이 문서는 QuEST Forum 감독작업그룹에서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TL 9000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핸드북 부록 B로 출판되었으며, 감독작업그룹에 의해 항상 최신판으로 수정될 수 있다.

목차

- I. 개요
 - 1. 정의
 - 2. 약어
 - 3. 관련 문서 및 참고문헌
- II. 인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 III. 심사 발견사항 및 해결의 분류 (이전 Alert 05-007B)
 - 1. 부적합 프로세스
 - 2. 중부적합 및 경부적합 사례
- IV. 일관된 심사 접근방법 및 인증기관과 조직에 대한 기준
 - 1. 목적 : 조직 및 인증기관
 - 2. 범위
 - 3. 조직 정보
 - 4. 인증기관 요구사항
 - 1) 예비심사 요구사항
 - 2) 현장심사 요구사항
 - 3) 사후심사 요구사항
- V. 인정기관 감독 요구사항
- VI. 성과지표 심사에 대한 책임 (이전 Alert 03-005A)

I. 개요

이 문서는 조직, 인증기관, 인정기관을 위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감독을 포함한 심사 프로세스의 내용과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보를 담고 있다.

1. 정의

- **시정 (Correction)** :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 (ISO 9000:2005, 3.6.6항)
-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ISO 9000:2005, 3.6.5항)
- **발견사항 (Finding)**
 - 1) 중부적합
 - 2) 경부적합
 - 3) 개선기회
- **부적합 (Nonconformity)**
 - 1) 요구사항의 불충족 (ISO 9000:2005, 3.6.2항)
 - 2) 품질 시스템의 장애를 말하며, 서면으로 된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부적합의 종결을 위해서는 해당 품질 시스템이 만족스럽게 실행되고 검증되어야 함
- **중부적합 (Nonconformity, Major)**
 - 1) 하나 이상의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측면을 실행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는 경우
 - 2)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경부적합이 발생되어 조직의 시스템에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3) 이전에 발행되었으나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경부적합
- **경부적합 (Nonconformity, Minor)** :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품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품질 시스템에서의 관찰된 잘못
- **개선기회** : 조직 시스템의 잠재적인 개선에 대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진술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조직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
- **발견사항 분류에 대한 지침** : 모든 부적합은 중부적합이나 경부적합으로 분류되어야 함. 시스템 운영상의 착오나 누락을 시스템의 착오나 누락으로 엄격하게 부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경부적합 보고가 급증할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함. 그러나 시스템 운영상의 착오나 누락에 대한 보고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하며, 개선기회의 보고로 간주하여야 함. 개선기회는 경부적합으로 위장하여 기입하지 않아야 함.

부적합 분류의 결정은 단순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고장과 관련되고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명백하고 정확한 결론을 유도하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2. 약어

AB :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ies)

CAR : 시정 조치 요구 (Corrective Action Request)

CB 또는 CRB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ies)

ORG : 조직 (Organization)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 : 계획된 최초심사,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 전에 조직이 인증기관에게 제공하는 정보

QMS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SME : 주제 전문가 (Subject Matter Expert)

SP : 서비스 제공업체 (Service Provider)

3. 관련 문서 및 참고문헌

ISO 9000:2005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정의

ISO/IEC Guide 62(2008.9.15 만료)의 적용을 위한 IAF 부속서

QF : 인정기관/인증기관 타당성 확인 심사 프로세스

ISO/IEC 1702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II. 인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인증기관은 QuEST Forum이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에는 인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망라되어야 한다(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들의 결합). 승인된 인정기관의 명단은 TL 9000 웹사이트(tl9000.org를 방문)에 있다.

매 3년마다 인증된 조직의 전 범위와 해당되는 모든 TL 9000 요구사항 및 성과지표에 대해 전면적인(100%)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에는 매 사후관리 시 심사했던 시스템의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심사팀은 각 심사의 종료 시 문서화된 발견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각 심사의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복수 사업장 심사의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직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문서화된 발견사항과 종합적인 심사 결론, 중요한 심사단서(Trail),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특정 고객에게 경영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및 개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 인증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 후 2년 동안은 이러한 고객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고, 심사원을 제공할 수 없다.

TL 9000 요구사항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각 팀원은 QuEST Forum이 승인한 TL 9000 심사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인증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대다수, 또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최소 1인은 이러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이수는 인증서를 통해 입증될 것이다.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턴트가 심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참관인으로 그 자격이 제한된다.

모든 구조적, 시스템적 부적합사항은 TL 9000 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부적합사항은 인증기관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ISO 인증서에 TL 9000에 대한 적합을 표시할 권한이 있다.

- 1) 이 실행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 2) QuEST Forum이 승인한 인정기관에 의해 TL 9000 인증서 발급을 인정 받았을 경우

인증기관은 규격의 해석에 따른 논쟁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II. 심사 발견사항 및 해결의 분류 (이전 Alert 05-007B)

1. 부적합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TL 9000 심사에서 파악된 중부적합 및 경부적합을 종결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부적합 종결을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심사 종료 시 문서화된 발견사항을 조직이 수령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규정한 시일 내에 시정, 근본 원인, 시정조치, 실행에 대한 허용 가능한 증거를 포함한 부적합의 해결. 이에 대한 예외는 인증기관이 동의하여야 하고, 정당성이 완전히 증명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부적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방문이 필요할 것이다.
- 2) TL 9000 인증서는 다음 시점까지는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 ① 모든 중부적합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 ② 경부적합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시정조치 계획이 상기의 시간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규정되었다.
- 3) 인증을 받은 조직은 해결되지 않은 중부적합이 있거나 인증서가 만료된 시점에 지연된 경부적합이 있는 경우 갱신 인증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후관리 심사 후 중부적합 종결에 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이미 인증을 받은 조직의 TL 9000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인증은 부적합이 해결될 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2. 중부적합 및 경부적합 사례

중부적합

- 요구사항 또는 성과지표 핸드북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측면의 누락
- 효과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프로세스의 실행 및 유지에 대한 조직의 시스템상 불충족
- 시스템 요소에 대한 기본 목표 달성의 불충족. 예를 들어, 교정의 기본 목표는 측정 장비가 의도된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법규 요구사항의 준수 불이행
- 결합 시 조직의 시스템 고장을 나타내는 규격, 프로세스, 시스템 일부의 동일한 요소 내 다수의 경부적합
- 선적된 부적합 제품 또는 프로세스 관리 불능이나 시스템 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로부터 제공된 부적합 서비스의 가능성을 판단 및 경험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인증기관이 이전에 제기했던 경부적합에 대한 시정의 고의적인 불이행
- 성과지표 핸드북의 계산/제외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일관된 데이터 제출이나 이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식되었을 때 다시 제출하는 이전 데이터의 고의적인 누락

경부적합

- 프로세스, 절차, 경영시스템의 수행에 있어서, 판단 및 경험에 의해 제공된 제품에 적은 리스크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관찰된 실수
- 심사 받은 시스템의 TL 9000 요구사항 또는 성과지표 핸드북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 불충족 중 중부적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IV. 일관된 심사 접근방법 및 인증기관과 조직에 대한 기준

1. 목적

1) 조직

최초인증이나 사후관리 또는 갱신 심사에 대한 준비로 조직이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및 데이터를 규정하고 그러한 심사 동안 인증기관이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수립하는 것.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심사원의 지식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심사 계획, 심사원이 강점과 약점, 지속적인 개선의 영역을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부정적인 지표나 중요한 변경이 제출된 경우, 인증기관은 이들 영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러한 심사를 위하여 유의하고 있는 영역들은 일정을 수립하게 하거나 심사 계획이 수정되게 할 수도 있다.

2) 인증기관

인증기관이 일관되고 종합적인 심사 접근방법의 보장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

2. 범위

최초인증, 사후관리, 갱신심사

3. 조직 정보

인증기관은 예정된 심사의 최소 3주 전(또는 합의된 시간 내)에 조직에게 다음의 정보 및 데이터를 획득하여야 한다.

비고 :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기한까지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를 계획하고 있는 조직은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정지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는 기한보다 충분히 미리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

- 1) 심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 범위 내에 있는 인원 수를 열거한다.
- 2) 심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 범위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예 : 개발, 기술 지원 센터, 코딩, 제조, 교육훈련, 수리)를 열거한다.
- 3) 심사 대상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범주를 열거한다.
- 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리된 영역에 의하여 TL 9000 인증 하의 제품을 열거하고 제품 지원의 모든 중요한 아웃소싱 요소(예 : 판 제조, 개발, 설계) 및 그 위치를 열거한다. 아래에 예로 제시된 도표를 사용할 수 있다.

위치 및 임직원 수 (심사 현장)	제품명 또는 참조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달라스 임직원 470명	1100	캐비닛, NPI, 회로판 개발	IMS - 설계, NMS	설치, 서비스, 기술 지원 센터
	1200	설계		
아웃소싱 요소	3200	제조, 판	설계	설치

- 5) 가장 최근의 심사 또는 인증 계약 승인 후 발생한 중요한 조직적인 변경사항, 취득(Acquisition), 아웃소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6) 조직은 가장 최근의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를 재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로 변경된 부분은 명확하게 강조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 요구사항

1) 심사 전 요구사항

- ① 요구된 시간 내에 필요한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를 획득한다.
- ② 이후의 심사를 계획할 때 조직이 제공한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를 사용한다.
- ③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는 기록되어야 한다.

2) 현장심사 요구사항

- ① ISO 19011 품질경영시스템·환경경영시스템 심사지침의 가장 최신 버전을 준수한다.
- ② ISO/IEC 1702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가장 최신 버전을 준수한다.
- ③ 심사 전 CB 정보 패키지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한다.
- ④ 지연된 시정조치 및 지연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9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미해결된 시정조치의 사례를 포함하여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시정조치의 효과를 검토한다.
- ⑤ 문서화 요구사항의 검토 시 현재 관행이 문서화된 절차에 반영되었고 적용 가능한 TL 9000 버전과 일치함을 보장한다.
- ⑥ 최근 인증기관 심사 이후의 고객 TL 9000 심사 발견사항 및 고객 만족도 결과의 표본을 검토한다.
- ⑦ 인증기관에 등록된 조직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불만사항의 진행을 추적한다.
- ⑧ 심사 내에서 특별히 집중할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품 회수의 근본 원인을 검토한다.
- ⑨ 이 문서의 6장에 따라, 수집, 타당성 확인, 검증, 제출을 포함하여 TL 9000 성과지표에 대한 심사 접근방법을 처리한다.
- ⑩ 심사 대상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 검토는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심사 후 요구사항

인증기관은 ISO 19011 및 ISO/IEC 17021 심사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 보고서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적용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에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고 문서화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V. 인정기관 감독 요구사항

인정기관은 모든 TL 9000 인증기관 감독 심사 동안, TL 9000 인증기관이 이 TL 9000 인증기관 실행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VI. 성과지표 심사에 대한 책임 (이전 Alert 03-005A)

심사 동안 모든 QuEST Forum 인증기관은 정의 및 요구사항을 포함한 TL 9000 QMS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성과지표 프로세스가 적절히 존재하고 효과적이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모든 지침/작업 지원은 인증기관 심사원의 예상을 명확히 하도록 돕는 데에 효과가 있다. 이 지침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TL 9000 핸드북에 현재 존재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명확화를 위한 것이므로, 추가 심사일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음의 인증기관 심사원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1) 인증기관은 조직이 다음을 포함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① 성과지표 수집 : 전부는 아니더라도,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5.2항 a와 c부터 j까지, b의 수집/제출 부분은 현장심사 전에 검증될 수 있다.
 - ②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5.2항에 따른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인. 인증기관은 TL 9000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깊이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아래의 8항 참조)
 - ③ 요구사항 핸드북 4.0의 5.4.1.C.1항과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2항 a와 b에 따른 성과지표 보고

- 2) 조직이 TL 9000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요구사항 핸드북 4.0의 8.5.2항 및 그 비교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1.a항, 3.5.2항 i와 j에 따라, 경영진,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품질/전략 목표 설정, 결과/동향 검토, 조직의 정의된 품질/전략 목표에서 벗어난 모든 성과에 대한 시정조치에 의한 검토를 포함한다.

- 3) 성과지표 핸드북의 3.2.b항 및 4.2.8.b항에 정의되었듯이, 만약 어떤 성과지표가 「면제」로 파악될 경우, 인증기관 심사원은 면제에 대한 문서화된 근거를 검토하고 유효함을 승인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심사원은 이 문서가 조직의 고객이 요청할 때 검토를 위해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QuEST Forum은 주장된 면제 또한 조직의 인증 프로필에 기록될 것을 권고한다.

- 4) 인증기관 심사원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1.b항에 따라, 성과지표가 고객/조직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 심사원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1.c항, 3.2항의 a와 b, 3.5.2항의 b에서 g를 따라, 성과지표가 성과지표 관리자(UTD)에게 보고되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에 대한 데이터 제출 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다.

- ① 「통과」 지정
- ② 「면제」 지정
- ③ 데이터 제출 보고서에 대한 모든 비고 또는 권고
- ④ 시험

추가적으로, 인증기관 심사원은 다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① 승인 받으려는 모든 면제가 문서화되었고 유효하다.
- ② 데이터 제출 보고서에서 「면제」로 표시된 항목은 핸드북 및 상기의 항목 3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 ③ 조직의 범위 내에서 나열된 모든 제품 범주에 대한 데이터 제출 보고서가 있고 조직의 인증 옵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과 제품 범주가 각각 적절하게 대응된다.

6) 현재의 성과가 TL 9000 성과지표에 대한 조직의 정의된 품질/전략 목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편차를 보인다면, 인증기관 심사원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1.a항, 3.5.2항 i와 j, 3.5.5.c항, 요구사항 핸드북 4.0의 8.5.2항 및 그 비고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문서화 되고, 진행과정이 추적됨을 검증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 심사원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2항 a와 b, 3.5.2.c항에 따라, 수집된 성과지표가 인증 범위, 인증 옵션(HSV), 제품 범주와 일관됨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심사 활동 전에 수행될 수 있다.

8) 인증기관 심사원은 요구된 성과지표에 대한 계산 규칙의 적절한 실행을 검증하여, 실제 데이터 제출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점검은 최소한 1년의 기간을 포함하는 데이터 일관성을 검토한다. (인증 조직이나 신제품이 1년 내에 등록된 경우는 예외. 이 경우, 데이터는 최소한 공식적인 제출이 발생하는 동안 검토되어야 한다. 비고 - 또한 다른 예외에는 최초 인증심사만이 있다. 이 경우, 단일한 사전 인증 데이터 제출만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요구사항 3.3.1.a를 충족하고 3.5.2항 a와 b를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 9) 인증기관 심사원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4.1항 및 3.5.2.c항의 검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RMS에 포함된 인증 정보(즉, 범위 및 제품범주)가 현재의 것이며 정확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심사 활동 전에 시작될 수 있다.

- 10) 인증기관 심사원은 성과지표 핸드북 4.0의 3.5.2.c항에 따라, 조직이 선택한 제품범주가 조직의 제품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심사 활동 전에 수행될 수 있다.